

졸업유예제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17. 12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수원과학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31조의 10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 소속 학생의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졸업유예제”라 함은 학칙 제31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졸업유예자”라 함은 졸업유예의 승인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“졸업유예제”는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소속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유예기간) 졸업유예제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.

제5조(유예절차) 졸업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“졸업유예신청서”를 작성해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한 후 학적과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6조(신청자격)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① 학칙 제5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

② 학칙시행세칙 제5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2년제는 4학기, 3년제는 6학기, 4년제는 8학기 이상 이수한 자

제7조(신청시기) ① 최초로 신청할 때는 2년제는 4학기, 3년제는 6학기, 4년제는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공지한 신청기간 내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② 2회째 신청할 때는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공지하는 신청기간 내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(학사관리) ① 졸업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신청의 의무가 없지만, 학점취득을 위해 수강신청(재수강 포함)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,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

5-0-18 졸업유예제 운영 규정

1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학점별 차등납부액에 따른다.

- ②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때는 계절학기 규정에 따른다. 단, 계절학기 수강도 등록한 자에 한한다.
- ③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졸업유예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직권취소한다.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망, 입원, 군입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“졸업유예등록취소신청서”를 작성해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한 후 학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등록금 환불은 학칙시행세칙 제 15조의 제5항을 준용한다.

제9조(학적) ① 1회째 졸업유예의 승인을 받은 학생이 제7조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으면, 첫번째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졸업으로 처리하고, 2회째 졸업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은 두번째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졸업으로 처리한다.

- ② 졸업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은 졸업유예 기간 중 휴학할 수 없다.
- ③ 일단 졸업유예 승인을 받으면, 승인된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 제8조의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수강신청취소나 등록취소가 발생하더라도 졸업유예 상태는 유지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